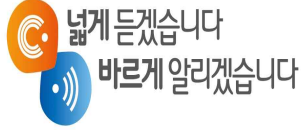
 <b>국토교통부</b>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<b>보도해명자료</b>		
	배포일시	2013. 8. 19(월) 총 1매 (본문 1)	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당 자	• 과장 박상열, 사무관 정연호 • ☎ 044-201-3828,3829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불법택시 ‘우버’ 당국 ‘금지초문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

- 세계일보의 “국토부는 우버(Uber)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내용”은 사실과 다름
  - 국토부는 우버(Uber)관련 불법 서비스 보도사항에 대해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·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(전국대여자동차조합연합회 포함)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2차례 걸쳐 지시(8.7, 8.16)한 바 있음

### <참고사항>

-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운전기사(차량 포함)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(Uber)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아님
- 우버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유상운송\*, 운전자 알선행위\*\*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,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큼
  - \* Uber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(여객법 제34조) : 1천만원 이하 벌금
  - \*\*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금지 위반(여객법 제34조) : 1천만원 이하 벌금
  - \*\*\*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, 알선금지 위반(여객법 제34조) :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### < 보도내용(세계일보, 8.19) >

- 운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우버(Uber)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운전기사(차량 포함)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국토부(서울시)는 이런 사실을 모르다가 취재진의 말을 듣고야 진상파악에 나섬